

제23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김화영 의원 발의】



2021. 10. 22.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395호로 2021년 10월 8일 김화영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영등포구의 공공기관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주도하고, 지역 사회에서 구민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보전 및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 라. 1회용품 사용 제한 등(안 제6조)
- 마. 교육 및 홍보 등(안 제7조)
- 바. 자발적 협약의 체결(안 제8조)
- 사. 자원순환우수업소 지정(안 제9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필요 시 반영
- 다. 입법예고 (2021. 10. 8.~ 10. 12.)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기관과 구민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하여 환경 보호 및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은
 - 조례명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이고 10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 조문으로 구성되었음.
 -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추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는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행사 등에 1회용품 사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7조에서는 1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 안 제8조에서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 촉진을

위해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업소 등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9조에서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앞장서고 있는 업소를 자원순환우수업소로 지정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 공공기관과 국민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하여 환경 보호 및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1인가구의 증가로 인한 배달 및 소규모 구매 증가, 커피문화 확산 등으로 인해 1회용 컵 등의 사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비대면 소비가 증가함과 동시에 1회용품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공공기관이 대응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조문내용은 상위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 고 자 료

1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4. (생략)

15.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6. ~ 17. (생략)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업·가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6. 그 밖에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업종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

2.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3.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2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1회용품) 법 제2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별표 1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09.4.6>

1회용품(제5조 관련)

1. 1회용 컵·접시·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2. 1회용 나무젓가락
3.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
4. 1회용 수저·포크·ナイ프
5.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과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한다)
6. 1회용 면도기·칫솔
7. 1회용 치약·샴푸·린스
8. 1회용 봉투·쇼핑백(환경부장관이 재질, 규격, 용도,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9.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한다)
10.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